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001
----------	------

제안년월일 : 2021년 12월 21일

제안자 : 운영위원장

1. 제안이유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이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의원의 겸직신고 공개 방법 등에 관한 조례 위임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인용 조문을 현행화 함(안 제1조).
- 나. 의원의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의회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안 제10조의2제4항 신설).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
-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38조”를 “「지방자치법」 제46조”로 한다.

제10조의2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을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의장은 의원의 겸직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연 1회 의회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0조의2(검직신고) ①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검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p> <p>②·③ (생략)</p> <p><신설></p>	<p>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46조----- ----- ----- -----.</p> <p>제10조의2(검직신고) ① -----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 ----- -----.</p> <p>②·③ (현행과 같음)</p> <p>④ 의장은 <u>의원의 검직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연 1회 의회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u></p>